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교도소 수형자 설문 분석을 통한 연구 -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교도소 수형자 설문 분석을 통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경찰연구관 신 동 욱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사회학습이론	2
2. 긴장이론	3
3. 사회유대(통제)이론	4
4. 기 타	5
III. 선행 연구 검토	6
1.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6
가.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 범죄에 대한 연구	6
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	8
2.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비행 및 폭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9
IV. 연구 방법	11
1. 교도소 수형자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	11
2. 주요 변수의 구성	12
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유형	12
나. 현재 재소하게 된 죄명	13
V. 교도소 수형자 대상 설문 분석 결과	1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가. 최종별 분류	14
나. 연령, 선고기간 및 전과별 분류	15
2.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16
가.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 유형별 경험	16
나. 가정폭력 가해자 및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17
나. 연령대별 가정폭력 피해경험	19
다. 아동·청소년기 가정상황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19
다.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당시 구조 요청경험	21
3.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	22
4.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피해경험	24
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경험	25
나. 살인죄와 가정폭력	27
다. 재산범죄와 가정폭력	28
라. 강도, 폭행·상해 등 폭력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29
5.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경험	30
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30
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32
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처벌경험	33
라. 연령대별 가정폭력 가해경험	34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5
1. 결 론	35
2. 정책적 제언	36
가. 「범죄의 순환고리 단절」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예방이 곧 강력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	36
나. 피해자 관점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37

다. 가정폭력의 대응중심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 : 스페인의 1:1 피해자 담당 경찰관제도 소개	38
라.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NGO-지자체-경찰이 연계된 종합적인 지 원체계 마련 필요	42
마.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한 체포우선주의 도입	43
바. 「가정폭력 전문경찰관」의 양성	48

참고자료

1. 스페인 가정폭력 위험성 진단(Valoración Policial del Riesgo: VPR) 질문표	50
2. 스페인 가정폭력 위험성 변화 평가(Valoración Policial de Evolución del Riesgo: VPER) 질문표	51

참고문헌	53
-------------------	-----------

표 · 그림 목차

<표 1> 학대피해 유형별 폭력범 체포비율	7
<표 2> 설문에 사용된 가정폭력 유형	12
<표 3> 현재 재소하게 된 죄명	14
<표 4> 연령, 선고기간 및 전과별 현황	15
<표 5>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구분	16
<표 6> 아동·청소년기 수형자와 일반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비교	17
<표 7>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18
<표 8>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18
<표 9> 연령대별 가정폭력 피해경험	19
<표 10> 아동·청소년기 경제적 형편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19
<표 11> 아동·청소년기 양육환경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20
<표 12> 아동·청소년기 양육환경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21
<표 13>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	22
<표 14> 수형자의 청소비행 유형별 경험	22
<표 15> 청소년 비행경험의 죄명별 분류	23
<표 16>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수형자 학력별 현황	24
<표 17> 죄종별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경험률	24
<표 18> 강력범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경험률	25
<표 19> 성범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26
<표 19-1> 성범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26
<표 20> 살인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27
<표 20-1> 살인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27
<표 21> 재산범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28

<표 21-1> 재산범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29
<표 22> 폭력성 범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29
<표 22-1> 폭력성 범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30
<표 23> 성인기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31
<표 24>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성장기 가정폭력 직·간접 경험에 따른 부부 폭력 가해율	32
<표 25> 성인기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33
<표 26> 가정폭력 가해에 따른 처벌경험	34
<표 27> 연령대별 가정폭력 가해경험	34
<표 28> 기관별 등록사용자 현황	40
<표 29> 위험진단평가결과에 따른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 면담·보호 주기 ..	40
<그림 1> VPR 등록 화면	41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죄라기 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이면에는 폭력이 만연한 현실이 숨어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매3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률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 23.5%, 정서적 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 13.5%로 부부 10쌍 중 2쌍은 신체적 폭력을, 절반이상에서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처럼 만연되어 있는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동시에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것 자체만으로도 정서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똥과리”(2009년작, 양익준 감독)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의 주인공인 상훈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누나와 어머니를 잃고 현재는 불법채권추심업자로 폭력을 휘두르는 불량배가 되어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 경험은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그 또한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감옥에서 출소한 아버지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조카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어린 조카에게서 자신이 어린 시절 보아왔던 폭력적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자신이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보게 된다. 물론, 상훈이

성장하여 범죄자가 되는 데 있어 가정폭력 피해경험만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 것이다. 가난한 경제상황,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 등 많은 가정적·환경적 요소가 존재하고 어머니와 누나의 부재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상황 이후의 삶도 평탄치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상황변수들이 폭발되어 나타나는 장면은 역시 아버지가 가하는 폭력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기 비행을 넘어서 성인이 된 후 성인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가정폭력이 갖는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가정폭력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에게서 겪은 직·간접적인 가정폭력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범죄나 청소년기의 비행 및 범죄성향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론들은 크게 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및 사회유대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간략히 해당 이론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사회학습이론

‘폭력의 순환(the cycle of violence)’ 또는 ‘폭력은 폭력을 낳는가?’ (Does violence beget violence?)라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명제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을 들 수 있다.

Surtherland, Akers 등 초기의 사회학습이론가들에 따르면 가족이나 또래집단 등 친밀한 그룹과의 관계에서 차별접촉, 모델링, 모방, 강화 등의 사회학습과정을 거치면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들은 폭력적, 탈선적 행동의 패턴을 배우고 수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차별 강화기제가 범죄행동의 실행과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별적접촉이론’ 내지 ‘차별적접촉·강화이론’을 주장하였다.¹⁾

Bandura(1977)는 인간의 행동이 보상이나 처벌 등 강화기체에 의한 영향보다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여 기존의 행동주의적 차별적접촉이론 보다는 관찰·모방이라는 모델링 과정 내지 관찰학습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청소년은 부모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고 폭력적인 부모를 모델링함으로써 가정 내·외의 유사한 상황에서 폭력의 행사를 당연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²⁾

2. 긴장이론

Merton의 전통적 긴장이론에 따르면 하부 계층 청소년들은 그들이 소속된 경제적 환경 등 사회구조(social structures) 안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부재로 인해 긴장과 좌절을 겪게 될 때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산층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할 수 없으며, 같은 하부계층 청소년 간에도 누군가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 송주영,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번역문), 소년보호연구 제16호, 2011. p.185.

2) 기광도,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범죄간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 p. 212.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은 Merton의 전통적 긴장이론을 수정하여 사회구조에 기인한 구조적 긴장 보다는 모든 계층의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긴장들이 비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긴장의 세 가지 요인을 첫째, 현재 또는 장래의 긍정적 가치목표의 달성 실패. 둘째, 현재 또는 장래의 긍정적 가치자극의 소멸, 마지막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부정적 자극의 존재를 들고 있으며, 그 예로 물리적·성적 학대, 방임,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문제들이 부정적 자극으로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조장하거나 비행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은 긴장 및 그러한 긴장들로 인해 파생된 화, 절망감,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만을 비행의 요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유대, 비행친구와의 접촉, 위반에 대한 태도, 개인성향 등 일정한 조건적 변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통합이론적 성격 또한 갖고 있다.³⁾

3. 사회유대(통제)이론

Hirschi, T(1969)로 대표되는 사회유대이론은 여타의 이론과 달리 비행과 범죄는 비행또래와의 접촉이나 욕망과 목표의 괴리로 인한 긴장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비행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이기적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쾌락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물음보다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람들을 친가치적, 친사회적으로 형성하는 유대(bonds)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가 깨어지거나 약해질 때 비로

3) 이성식,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제 15권 제2호, 2003, pp.88-89.

소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유대는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의 서로 연관된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특히 애착이 사회유대의 중심변인으로 부모와 학교에서의 애착을 비행과 범죄의 억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유대이론은 가출, 반항, 약물이나 범죄 등의 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애착, 교육적 목표에의 전념 등이 비행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Rouse & Eve, 1991)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지지되고 있다.⁴⁾

4. 기 타

이 밖에도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복잡한 외상적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어 한 가지 장애보다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복합적 증상을 가지게 되며, 가정폭력 과정에서 갖게 된 무의식적인 분노와 두려움은 아동들을 만성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뢰감이 없게 만들며, 특히 이런 사람들 중 남자는 자신을 공격자로 정체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편집증을 가지게 되거나 폭력적인 청소년이 되며 성인이 되어서는 알코올,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기학대에 빠지거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외상(trauma)이론이 있다.⁵⁾

또한 폭력적인 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를 효과적이고 비폭력

4) Rouse, L. P., & eVE, r. a. (1991). Explaining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 girls: Internal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Clinical Sociology Review*, 9, pp.161-177/ 유순화(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292. 재인용

5) 이경은·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2000, pp.99-101.

적으로 해결하려는 가족의 정상적 치유능력을 저해하는 일정한 신념을 소유하게 된다는 체계신념접근이나⁶⁾, 성장 중인 청소년은 가족 안에서 남성과 여성, 아빠와 엄마와 같은 역할에 대한 쉐마를 형성하게 되는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이러한 역할에 관해 폭력적 역할을 형성하게 되어 장래의 비행과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이론이 있다.⁷⁾ 이러한 체계신념접근이나 관계이론의 경우 그 논의가 사회학습이론의 전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Ⅲ. 선행 연구 검토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외국에서 진행된 일부 연구에서 그 선행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국내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비행에 맞추어져 있다.

1.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가.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 범죄에 대한 연구

우선 외국의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Widom(1989)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소년범죄, 성인범죄와 폭력행위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⁸⁾ 어린 시

6) Javad H. Kashani, Wesley D. Allan; 조미숙 역,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도서출판 21세기사, 2005, p.30.

7) 이정은·장덕희. 위의 논문, pp. 101-103.

8) 학대·방임그룹:대조군의 소년범 체포율 26%:16.8%, 성인범죄 체포율 28.6%:21.1%, 폭력행

절 피해경험과 성인기 반사회적·폭력적 행위간의 연결이 확실한 것은 아니며, 세대간 폭력의 전이가 예방프로그램과 정책들로 인해 반드시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⁹⁾

<표 1> 학대피해 유형별 폭력범 체포비율

학대 유형	표본 수(n)	폭력범 체포 비율(%)
물리적 학대	76	15.8
방임	609	12.5
물리적 학대와 방임	70	7.1
성적학대와 기타 학대	28	7.1
성적학대	125	5.6
통제군	667	7.9

※ 출처 : Widom(1989), p.164, $\chi^2(5) = 13.85, P=0.02$

또한 McCord(1983)는 1939년과 1945년 사이 232명의 남자청소년들을 방임(Neglected), 학대(Abused), 거부(Rejected), 사랑(Loved)의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30~40년 후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룹에 비해 방임, 학대, 거부의 그룹에서 소년범 비율이 높았으며, 성인범죄로 처벌받은 비율의 경우 방임과 학대그룹에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Salter D. 외(2003)의 연구결과, 1980년에서 1992년 사이 성학대 피해자로 병원진료를 받은 소년 224명(평균 11세)의 18세 이후를 추적한 결과 이 중 26명(12%)이 성범죄자(경찰경고 및 유죄판결 7명) 또는 성범죄 경향(1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 범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이 어린 시절 학대 피해경험자를 추적하여 성인기 범죄여부를 알아본 것에 반하여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성인

위 체포율 11.2%:7.9%, Widom(1989), p.163.

9) 26%의 학대경험 아동이 소년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나, 74%는 그렇지 않으며, 11%의 학대경험 아동이 폭력행위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90% 가까운 학대피해아동은 그렇지 않다고 역설.

기 실제로 행한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성향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김예정, 김득성(1999)은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데이팅 폭력을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아동기 체벌경험이 심리적 공격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간의 폭력 목격은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은경, 엄애선(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동기(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학대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경험이나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성인기 성폭력가해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다(최재희, 배화옥, 2012).

이밖에도 중앙일보¹⁰⁾에서 살인·강도·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소위 강력범 159명에 대한 양형조사보고서와 판결문을 활용하여 그들의 성장사와 학교생활 등을 추적한 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4.7%가 부모의 직접적인 신체·언어적 폭력과 방임 등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존속살인범 중 80%가 신체적·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

Browne K & Herbert M(1997)과 Egeland B& Bosquet M & Chung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유년기 학대경험자의 경우 그들 자

10) 중앙일보, 2012년 5월 29일자 10면, “잔혹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충격’ ”제하

녀와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그러나 이러한 세대간 학대의 전이는 위험(risk factor), 보호(protective factor), 중재요소(mediating factor)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¹²⁾

또한 Straus(1990)에 따르면, 아동기때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할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5배 이상 높 것으로 나타났다.¹³⁾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의 부부폭력 가해율은 69.6%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50.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신체·언어·정서적 폭력 등 모든 폭력유형에서도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서도 목격집단의 부부폭력 가해율이 72.6%로 미목격집단의 56.2%에 비해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모든 세부 유형의 폭력에서도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비행 및 폭력성에

-
- 11) Browne K, Herbert M. Preventing family violence. Chichester, J. Wiley, 1997, Egeland B, Bosquet M, Chung AL.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maltreatment: implications for breaking the cycle of abuse. In: Browne K et al., eds. Early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 handbook. Chichester, J. Wiley, 2002, pp. 217-232/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cycles of violence, 2007. p. 8, 재인용
- 12) Pinheiro PS.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New York, United Nations, 2006, Dixon L, Browne KD, Hamilton CE. Police recognition of links between child abuse and spouse abuse. Child Maltreatment 1999, 4:136-147/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cycles of violence, 2007. p. 8, 재인용
- 13) Straus, M, Social Stress and Marti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김재엽,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연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호, 1997, p. 75, 재인용

대한 선행연구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 내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외국의 의미 있는 연구로는 Skuse 외(1998)가 영국의 11~15세 성학대 피해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가 있다. 전체 조사대상 25명을 순수하게 성학대의 피해자(11명)와 피해자임과 동시에 다른 아동들을 성학대 한 가해자(14명)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해 성학대피해 소년이 성학대 범죄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13개)¹⁴⁾를 연구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폭력 목격경험, 보호의 단절의 세 가지 잠재위험요소가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피해경험이 가해자가 되는 것에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 보다는 가족 간 폭력에의 지속적인 노출 등이 중요한 위험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김재엽, 송아영(2007)은 서울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어릴 때의 부모간 폭력적인 행동을 모델링하여 답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았다. 또한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2007)의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고, 또한 성폭력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 가정폭력피해경험, 가정폭력목격경험, 가족에 의한 거부, 보호단절, 또래에 의한 거부, 일반화된 불만감정, 아버지상(像)에 대한 낮은 인식, 비학대적 남성애착상(像)의 부재, 어머니의 아동기 성적학대 피해경험, 모성 우울증, 낮은 형제애, 어머니의 아동기 물리적 학대 피해경험, 낮은 죄책감이 있다. Skuse D et al. (1998), p.177

로 나타났다.

이경은·장덕희(2000)는 여타의 논문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양적연구방법을 통해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설명한데 반해, 실제 폭력가해자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남녀학생 14명을 심층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직·간접적 노출 경험은 청소년의 자긍심에 문제를 야기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노치영·박성연(1992)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과 부모간에 행해진 공격적 대화나 폭력을 관찰하는 것, 즉 직접폭력과 간접폭력 모두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직접폭력피해 보다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간접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광도(2005)는 서울시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폭력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각각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중 특히 자녀에 대한 직접폭력이 청소년 범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 방법

1. 교도소 수형자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범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소재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최종이나 가정폭력 가 피해경험 유무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설문에 동의한 수형자에 한하여 무작위로 실시되었다. 실시결과 총 응답자는 545명이었으며, 이 중 무성의한 응답 등 59명을 제외한 최종 유효표본수는 총 486명이었다.

2. 주요 변수의 구성

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유형

가정폭력 경험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미국의 Straus와 Gelles가 개발한 CTS(Conflict Tactics Scale)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CTS 척도는 가족의 폭력 또는 구타 등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유일한 표준화된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¹⁵⁾ 본 연구에서는 CTS 척도를 변형하여 구성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정폭력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폭력은 다시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으로 나누었으며, 체별항목을 추가하였다.

CTS로 구성된 조사는 대부분 최근 1년간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짧게는 몇 년 전 혹은 길게는 수십 년 전의 경험을 질문한다는 연구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개별유형별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을 구성하는 대신 세부 유형을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등의 큰 문항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 2> 설문에 사용된 가정폭력 유형

유형	세부 유형 예시
언어적 폭력	- 욕이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15) 김재엽,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2007, p.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리지는 않고 괴롭히기만 했다 -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했다 -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경미한 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 세계 밀쳤다 -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 회초리나 자 등으로 종아리나 손바닥을 맞았다 - 기타 이와 유사한 폭력
심각한 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물건(혁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칼,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 기타 이와 유사한 폭력
체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초리나 자 등으로 종아리나 손바닥을 맞았다 - 기타 이와 유사한 폭력

또한 부모로부터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도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피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폭력을 직접폭력과 간접폭력으로 나누었으며, 가해자의 경우 부와 모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나. 현재 재소하게 된 죄명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범죄 유형 8가지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범죄유형의 선정은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 상 죄명별 수형자 현황¹⁶⁾에 따른 분류 중 인원이 적은 ‘폭행 및 상해’는 성격이 유사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과 묶어 혼동을 피하고, ‘강간·강제 추행 등 성범죄’와 ‘마약류’를 별도로 추가하여 “① 절도 ② 강도 ③ 폭행,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범죄 ④ 사기 및 횡령 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⑥ 살인 ⑦ 과실범 ⑧ 마약류 ⑨ 기타”로 구성하였다.

16) 교정본부, 2011 교정통계연보, 2011, p.93.

V. 교도소 수형자 대상 설문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죄종별 분류

현재 재소하게 된 죄명에 따른 응답자 분포는 절도가 109명(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횡령(18.1%)으로 재산범죄가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였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사범, 강도 등 폭력을 수반하는 강력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표 3> 현재 재소하게 된 죄명

구분	합계	절도	강도	폭행, 상해, 폭처법 위반	사기, 횡령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살인	과실범	마약류	기타
빈도 (%)	486 (100)	109 (22.4)	41 (8.4)	68 (14.0)	88 (18.1)	83 (17.1)	25 (5.1)	7 (1.4)	11 (2.3)	54 (11.1)

※ 여러 죄명일 경우 중한 죄로 표기

이러한 분포는 교정본부 통계자료에 따른 죄명별 수형자 현황분포(2011년 말 기준)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¹⁷⁾

17) 교정본부 통계자료,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 기타>절도(17.0%)>사기·횡령(12.7%)>살인>강도>폭력행위 등 처벌법>과실범>폭행 및 상해 순.

나. 연령, 선고기간 및 전과별 분류

다음으로 연령별 분포에서는 30~39세 연령층이 전체의 31.9%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연령층이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령분포는 교정본부 통계자료에 따른 2011년 수형자 연령분포 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¹⁸⁾

<표 4> 연령, 선고기간 및 전과별 현황

연령	빈도	퍼센트	선고기간	빈도	퍼센트	전과	빈도	퍼센트
19세~29세	63	13.0	6개월 미만	15	3.1	초범	179	36.8
30세~39세	155	31.9	6개월 ~ 1년 미만	41	8.4	2범	83	17.1
40세~49세	124	25.5	1년 ~ 3년 미만	176	36.2	3범	76	15.6
50세~59세	110	22.6	3년 ~ 5년 미만	144	29.6	4범	42	8.6
60세~69세	25	5.1	5년 ~ 10년 미만	84	17.3	5범 이상	94	19.3
70세 이상	6	1.2	10년 ~ 15년 미만	11	2.3	합계	474	97.5
합계	483	99.4	15년 이상, 무기, 사형	12	2.5	결측	12	2.5
결측	3	0.6	합계	483	99.4			
			결측	3	0.6			

현재 재소 당시의 선고기간에 따른 분류로는 1년~3년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전과를 포함한 전체 전과별 분류에서는 초범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5범 이상이 19.3%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8) 교정본부 통계자료에 따른 2011년 연령별 수형자 현황분포는 40대(31.1%)>30대(25.7%)>50대(20.3%) 순임

2.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 유형별 경험

전체 조사대상자 486명 중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 부모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받거나, 부모 상호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간접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직접폭력과 간접폭력을 모두 경험한 사례는 153명(전체 수형자의 31.5%, 전체 피해자의 61.4%)으로 과반수 이상의 피해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가정폭력피해에 동시에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구분
(유효표본 총 486명)

유형별	직접 또는 간접피해	직접피해	간접피해	직접과 간접 모두
빈도수	249(51.2%)	226(46.5%)	176(36.2%)	153(31.5%)

※ 복수응답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직접피해경험은 언어폭력의 경우 수형자가 32.9%로 일반 남성(27.1%)에 비하여 약 6%, 경미한 신체폭력은 33.3%로 약 16%, 심각한 신체폭력은 21%로 약 14% 정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체벌의 경우만 일반남성의 피해율이 50.8%로 수형자의 3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정도의 훈육목적 체벌이 아직까지 가정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정서를 감안하면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응답자의 폭력에 대한 상대적 편차가 큰 폭력유형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미한 신체폭력과 심각

한 신체폭력 유형에 있어 수형자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간접피해경험의 비교에 있어서도 언어폭력을 제외하고 경미한 신체폭력의 경우 14.5%, 심각한 신체폭력의 경우 15.7% 수형자 집단의 피해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동·청소년기 수형자와 일반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비교

구분	수형자 대상 조사 결과	여가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남성)
성장 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직접피해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32.9%	27.1%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37%	50.8%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33.3%	17.2%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21%	7.3%
성장 시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간접피해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32.3%	33.0%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27%	12.5%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20.4%	4.7%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인식되는 경미한 신체폭력과 심각한 신체폭력에 대한 직·간접 피해경험율이 수형자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가정폭력 가해자 및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직접폭력의 유형별로는 체벌 피해자가 1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경미한 신체폭력(162명), 언어폭력(160명), 심각한 신체폭력(102명)의 순이었다. 수형자의 과거 피해경험임을 감안하면 자녀에 대한 처벌이 훈육수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 피해자 수

폭력유형	언어폭력 (160명)		경미한 신체폭력(162명)		심각한 신체폭력(102명)		체벌 (180명)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가해자								
빈도	133	81	129	80	82	47	148	88
비율(%)	83.1	50.6	79.6	49.4	80.4	46.1	82.2	48.9

※ 세부유형 및 가해자별 복수응답

가해자는 모든 폭력유형에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많이 나타났다.

간접폭력 즉,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도 모든 폭력유형에 있어 가해자는 아버지였으며, 상호간의 폭력을 제외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가해자 비중을 보면 언어폭력(52.3%)>경미한 신체폭력(47.4%)>심각한 신체폭력(3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의 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가해자가 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 피해자 수

폭력유형	언어폭력 (157명)			경미한 신체폭력 (131명)			심각한 신체폭력 (99명)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가해자									
빈도	132	69	80	114	54	65	87	34	43
비율(%)	84.1	43.9	51.0	87.0	41.2	49.6	87.9	34.3	43.4

※ 세부유형 및 가해자별 복수응답

나. 연령대별 가정폭력 피해경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직·간접 피해자를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59세, 30~39세, 40~49세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저연령대에서 가정폭력 피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연령대별 가정폭력 피해경험

구분	합계	19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69세	70세 이상	결 측
전체	486	63	155	124	110	25	6	3
가정폭력· 간접 피해자	249	30	78	61	64	10	4	2
비율(%)	51.2	47.6	50.3	49.2	58.2	40.0	66.7	

이는 저연령대로 갈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가부장적 문화의 쇠퇴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아동·청소년기 가정상황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1) 경제적 형편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아동·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가정폭력의 직·간접 피해경험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이하의 계층에 속한 피해자가 213명으로 전체 직·간접피해자의 8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아동·청소년기 경제적 형편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구분	합계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비교적 어려운 편	보통	비교적 부유한 편	부유한 편	매우 부유한 편
전체	483	51	86	83	187	41	25	10
피해자	249	24	44	55	90	23	8	5
동일 계층내 비율		47.1	51.2	66.3	48.1	56.1	32.0	50.0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피해자/전체		123/220(55.9%)			113/228(49.6%)		13/35(37.1%)	

분석의 편의를 위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비교적 어려운 편’을 저소득층으로, ‘보통’과 ‘비교적 부유한 편’을 중산층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자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중산층이 49.6%, 고소득층이 37.1%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검증결과 p값이 0.084로 90% 신뢰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 경제상황과 가정폭력 피해경험률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육환경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아동·청소년기의 양육환경과 가정폭력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직·간접 피해자가 양부모 아래에서 자랐으며, 동일 양육환경내에서의 피해 경험비율은 보호시설 양육이 100%, 조부모 양육환경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조부모 또는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정폭력도 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겠다.

<표 11> 아동·청소년기 양육환경과 가정폭력 피해경험

구 분	합계	양부모 양육	편부모 양육	조부모 양육	친척 양육	보호시설 양육	기타
전체	375	256	73	20	10	6	10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자	202	139	37	12	4	6	4
동일 환경내 비율		54.3%	50.7%	60.0%	40.0%	100.0%	40.0%

※ 무응답 등 결측이 111명으로 높게 나타났음

다.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당시 구조 요청경험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당시 구조요청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직·간접적 가정폭력 피해자 249명 중 불과 25명(10%)만이 이웃이나 경찰, 시민단체 등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2>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시 구조요청 경험

구 분	건 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웃	12	1	4	2	4	1
친척, 친구	10	3	1	2	2	2
경찰	8	3	3	1		1
시민단체	5	2	1		1	1
지역관공서	4	2	1			1

※ 5개 구조요청 단위에 대한 복수응답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이웃이나 친척,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공적기구 중에는 경찰, 시민단체, 지역관공서 순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스스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 보다는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도움을 구해 사적으로 처리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경찰, 지역관공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 또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3.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

수형자들의 청소년기 비행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수형자 486명 중 291명(59.9%)이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3>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

	청소년기 비행경험자	청소년기 비행 미경험자
계	291	195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자	177(60.8%)	72(36.9%)
가정폭력 미경험자	114(39.2%)	123(63.1%)

※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p=0.00$

청소년기 비행경험자의 60.8%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39.2%는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가정폭력 직·간접피해자 249명 중 177명(71.1%)이 급우 구타 등 신체폭력, 절취·공갈 등 금품갈취, 따돌림, 성추행·강간 등 성폭력과 음주·흡연·가출 등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수형자 237명의 경우는 114명(48.1%)이 청소년기 비행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결과 신뢰수준 99%에서 청소년기 비행경험과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비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 모두 가출 등 지위비행,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순으로 많았다.

<표 14> 수형자의 청소년비행 유형별 경험
(%: 전체 유효표본 486명 대비)

구분	전체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가출 등 지위비행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자	177명	103 (21.2%)	65 (13.4%)	47 (9.7%)	18 (3.7%)	129 (26.5%)
미경험자	114명	56 (11.5%)	25 (5.1%)	17 (3.5%)	11 (2.3%)	81 (16.7%)

※ 비행유형 복수응답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유형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 비행경험 수형자 291명을 최종별로 분석해 보면 마약류를 제외한 전체 죄명별 분류에서 가정폭력의 직·간접피해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청소년 비행경험의 죄명별 분류

구분	합계	절도	강도	폭행, 상해, 폭처법 위반	사기, 횡령	강간, 강제추 행 등 성범죄	살인	과실 범	마약 류	기타
전체	291	71	31	46	38	59	14	4	7	21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자	177	45	16	27	21	41	9	2	3	13
	60.8	63.4	51.6	58.7	55.3	69.5	64.3	50.0	42.9	61.9
미경험 자	114	26	15	19	17	18	5	2	4	8
	39.2	36.6	48.4	41.3	44.7	30.5	35.7	50.0	57.1	38.1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이 6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살인과 절도, 폭행 등 폭처법 위반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수형자의 학력과 가정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자의 45.2%인 109명이 고등학교 중퇴이하

의 학력이었으며,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48.8%(82명)가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나, 수형자의 40%이상이 고등학교 중퇴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유형, 빈도와 수형자의 최종 학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빈도만을 고려하면, 고졸이하의 수형자 중 192명(41.8%)이 가정폭력피해자인 반면, 피해경험이 없는 수형자는 159명(34.6%)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수형자 학력별 현황

구분	합계	무학	초등 중퇴	초졸	중등 중퇴	중졸	고등 중퇴	고졸	대학 이상
전체	459	6	17	14	50	40	64	160	108
직·간접 피해자	241	1	11	9	29	24	35	83	49
	52.5	16.7	64.7	64.3	58.0	60.0	54.7	51.9	45.4
미경험자	218	5	6	5	21	16	29	77	59
	47.5	83.3	35.3	35.7	42.0	40.0	45.3	48.1	54.6

※ 결측 : 27명

또한 무학을 제외한 고졸이하의 학력에서 동일 학력그룹 내 50%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피해경험

구체적으로 현재 재소하게 된 죄명별로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가정폭력을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수형자가 63.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표본수가 적은 과실범을 제외하고는 살인이 60%, 절도(56%), 강도(48.8%) 등의 순으로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죄종별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경험률

구분	합계	절도	강도	폭행, 상해, 폭처법 위반	사기, 횡령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살인	과실범	마약류	기타
전체	486	109	41	68	88	83	25	7	11	54
직·간접 피해경험	249	61	20	33	37	53	15	4	3	23
	51.2	56.0	48.8	48.5	42.0	63.9	60.0	57.1	27.3	42.6

다음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강력범죄인 강도(41명), 폭행·상해·폭처법 위반(68명),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83명), 살인범(25명) 등 217명과 절도, 사기·횡령 및 여타 범죄(269명)를 구분하여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경험에 관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강력범 217명 중 55.8%인 121명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여타 범죄의 경우 47.6%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 p값이 0.083으로 90%신뢰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직·간접피해경험과 성인기 강력범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강력범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 피해경험률

구분	강력범	여타 범죄
전체	217명(100%)	269명(100%)
가정폭력 직접피해경험	121명(55.8%)	128명(47.6%)
미경험	96명(44.2%)	141명(52.4%)

※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 p=0.083

다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비율이 높은 성범죄, 절도, 강도, 폭력범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경험

성인기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 수형자 83명에 대해 이들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를 직·간접 및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등 행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범죄 수형자는 50명(60.2%)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부와 모 모두에게 직접적인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의 직접적인 가정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9> 성범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체벌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가해자								
빈도	28	17	28	20	13	13	26	22
비율(%)	56	34	56	40	26	26	52	44

※ 성범죄 83명 중 직접폭력피해자 50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피해유형에 있어서는 언어폭력과 경미한 신체폭력, 체벌이 비슷한 비중으로 심각한 신체폭력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간접폭력의 경우는 전체 성범죄자 83명 중 36명(43.4%)이며, 모든 유형에 있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 비율이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19-1> 성범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가해자									
빈도	29	15	21	20	12	16	16	7	11
비율(%)	80.6	41.7	58.3	55.6	33.3	44.4	44.4	19.4	30.6

※ 성범죄 83명 중 간접폭력피해자 36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폭력유형에 있어서는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순으로 많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살인죄와 가정폭력

살인죄로 수용된 25명에 대해 이들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를 직·간접 및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등 행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인죄의 경우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13명(52.0%)으로 대부분은 부에 의한 피해경험이 많았다.

<표 20> 살인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체벌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가해자								
빈도	8	6	9	6	7	3	5	4
비율(%)	61.5	46.2	69.2	46.2	53.8	23.1	38.5	30.8

※ 살인죄 25명 중 직접폭력피해자 13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피해유형에 있어서는 경미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순으로 많았으나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간접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10명(40.0%)이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두 배가량 높았으며,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0-1> 살인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가해자									
빈도	8	4	6	4	2	4	4	3	4
비율(%)	80	40	60	40	20	40	40	30	40

※ 살인죄 25명 중 직접폭력피해자 10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폭력유형에 있어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경미한 신체폭력과 심각한 신체폭력에 비슷한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재산범죄와 가정폭력

절도와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수용된 197명에 대해 이들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를 직·간접 및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등 행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산범죄자 중 직접폭력피해자는 85명(43.1%)으로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부에 의한 경우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재산범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체벌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가해자								
빈도	47	30	42	31	24	17	55	34
비율(%)	55.3	35.3	49.4	36.5	28.2	20.0	64.7	40.0

※ 사기·횡령죄 등 재산범죄 수형자 197명 중 직접폭력피해자 85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그러나 피해유형에 있어서는 체벌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어폭력이 높은 비중을 보여 다른 범죄 보다는 경한 정도의 가정폭력 피해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간접폭력의 피해자는 71명(36%)으로 모든 유형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두 배가량 높았으며,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1> 재산범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빈도	52	31	30	44	23	27	33	10	16
비율(%)	73.2	43.7	42.3	62.0	32.4	38.0	46.5	14.1	22.5

※ 사기·횡령죄 등 재산범죄 수형자 197명 중 직접폭력피해자 71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라. 강도, 폭행·상해 등 폭력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강도 및 폭행·상해와 폭력행위범죄 등 폭력성 범죄로 수용된 109명에 대해 이들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를 직·간접 및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등 행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폭력성 범죄 수형자 중 직접폭력의 피해자는 51명(46.8%)으로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부에 의한 경우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폭력성 범죄 수형자의 직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체벌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빈도	34	18	34	15	28	12	39	20
비율(%)	31.2	16.5	31.2	13.8	25.7	11.0	35.8	18.3

※ 강도, 폭행·상해 및 폭처법 위반죄 수형자 109명 중 직접폭력피해자 51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피해유형에 있어서는 체벌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어폭력과 경미한 신체폭력이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간접폭력 피해자는 41명(37.6%)으로 모든 유형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두 배가량 높았으며,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과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1> 폭력성 범죄 수형자의 간접폭력 유형 및 가해자에 따른 분류

폭력유형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부	모	상호
가해자									
빈도	32	15	18	32	13	14	25	11	10
비율(%)	78.0	36.6	43.9	78.0	31.7	34.1	61.0	26.8	24.4

※ 강도, 폭행·상해 및 폭처법 위반죄 수형자 109명 중 간접폭력피해자 41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폭력유형에 있어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경미한 신체폭력과 심각한 신체폭력 순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경험

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직·간접피해자 중 본인이 성인이 된 후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본인이 성인이 된 후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혼응답자 385명 중 110명(28.6%)이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194명) 중 성인이 된 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85명(43.8%)이었으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없었으나(191명)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25명(13.1%)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을 가해할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23> 성인기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총 응답자 : 385명)

구 분	기혼 응답자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	배우자에 대한 경미한 신체폭력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신체폭력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피해자	194명	77(39.7%)	56(28.9%)	35(18.0%)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	191명	24((12.6%)	14(7.3%)	5(2.6%)
카이스퀘어 테스트 p-value		0.000	0.000	0.000

※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직·간접피해자 249명 중 미혼·무응답자 55명을 제외한 194명, 가정폭력 미경험자 237명 중 미혼·무응답자 46명을 제외한 19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가정폭력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직·간접피해경험자의 39.7%가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 28.9%가 경미한 신체폭력, 18%가 심각한 신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 미경험자들에 비해 유형별로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양 집단 및 배우자에 대한 폭력 유형별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 또한 모든 유형에서 99%신뢰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인기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여가부의 조사결과에서도 성장기 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직접폭력피해자의 경우 3배(신체폭력의 경우), 간접폭력피해자의 경우 경한 신체폭력에서 2배 높은 가해율을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폭력유형에 따라 가해율의 차

이는 있으나 수형자와 일반인 모두에서 성장기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율이 높아, 폭력의 세대간 전이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4>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성장기 가정폭력 직·간접 경험에 따른 부부폭력 가해율
단위 : %(명)

구분	정서적 폭력	경한 신체폭력	중한 신체폭력
남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율			
성장기 학대 경험			
유	42.5	14.5	2.2
무	27.0	5.3	0.9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			
유	46.7	15.3	1.6
무	30.0	7.9	1.5

※ 출처 :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130.

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또한, 본인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후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도 전체 유자녀 응답자의 83명(23.8%)이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이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그룹(174명)에서는 65명(37.4%)이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은 그룹(175명)에서는 18명(10.3%)이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양그룹간에 3배 이상의 가해율 차이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피해자 174명 중 47명(27.0%)이 자녀에 대해 경미한 신체폭력을 26명(14.9%)이 심각한 신체폭력 등의 가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성인기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경험
(총 응답자 : 349명)

구 분	有자녀 응답자	가해 유형 별			
		자녀에 대한 언어폭력	자녀에 대한 체벌	자녀에 대한 경미한 신체폭력	자녀에 대한 심각한 신체폭력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직·간접피해자	174명	41 (23.6%)	49 (28.2%)	47 (27.0%)	26 (14.9%)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	175명	14 (8.0%)	10 (5.7%)	9 (5.1%)	7 (4.0%)
카이스퀘어 테스트 p-value		0.000	0.000	0.000	0.001

※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직·간접피해자 249명 중 미혼·무자녀 등 75명을 제외한 174명, 가정폭력 미경험자 237명 중 미혼·무자녀 등 62명을 제외한 175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가해유형별 복수 응답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와 비교해서 대부분의 가해 유형에서 3~5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집단과 미경험집단 및 자녀에 대한 폭력유형별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 또한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와 99%신뢰수준에서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와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폭력의 세대간 전이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처벌경험

다음으로 성인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중 14명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임시조치, 보호처분과 여타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가정폭력 가해에 따른 처벌경험

구분	처벌 유형			
	임시조치	보호처분	형사처벌	합계
처벌경험	4	4	6	14

배우자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가해유형별로 39~97명이며, 자녀에 대한 유형별 가해자가 33~59명인 것에 비하면 적게는 가해자의 14.4%, 많게는 42.4%만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연령대별 가정폭력 가해경험

전체 수형자의 연령에 따른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표본수가 적은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 연령대별 가정폭력 가해경험

구분	합계	19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69세	70세 이상
전체	483	63	155	124	110	25	6
배우자에 대한 폭력	109	5	22	22	50	8	2
	22.6(%)	7.9(%)	14.2(%)	17.7(%)	45.5(%)	32.0(%)	33.3(%)
자녀에 대한 폭력	82	2	6	23	40	8	3
	17.0(%)	3.2(%)	3.9(%)	18.5(%)	36.4(%)	32.0(%)	50.0(%)

※ 전체 유효표본 486명 중 연령 미응답 3명 제외

이는 설문이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 가해 빈도를 묻는 것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 후 가정폭력 가해 발생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이며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세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경향이 적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 론

교도소 수형자 설문조사 결과, 유효표본 총 486명 중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직·간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에서도 경미한 신체폭력과 심각한 신체폭력 경험이 각각 14%와 16% 높게 조사되었다. 범죄를 유발하는 가정적, 사회·환경적 요인 등 수많은 범죄유발 요인 중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직접적으로 성인기 범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형자 집단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다는 것은 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가정폭력 피해경험도 주요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형자 최종별 가정폭력피해경험에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강력범죄인 강도, 폭행·상해 등 폭처법위반, 강간 등 성범죄, 살인범 217명의 52.5%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피해경험은 성인기 강력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기 비행경험에서도 가정폭력의 직·간접피해 경험집단이 미경험 집단에 비해 23%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수많은 가정적, 환경적 요인 중 가정폭력피해경험이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성인이 된 후 본인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

서도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집단이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등 모든 유형에 있어 미피해경험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해율을 보였으며,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율에서도 3~5배 이상 높았다. 통계적으로도 어린 시절 피해경험과 성인이 된 후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와는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가정폭력을 넘어서 강력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른바 ‘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설’ 또는 ‘폭력의 순환’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예방이야말로 말로 장기적으로 학교폭력, 성범죄 등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며 본 연구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2. 정책적 제언

가. 「범죄의 순환고리 단절」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예방이 곧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환경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을 포함한 여러 이론들과 이를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경험 또한 범죄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서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미 범죄로 교도소에 재소 중인 성인 남성 수형자의 51.2%가 어린 시절 직·간접적인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었

으며, 특히 폭력을 수반하는 강력범죄인 강도, 폭행·상해·폭처법 위반범죄, 강간 등 성범죄, 살인죄 수형자의 55.8%가 어린 시절 직·간접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비행경험에서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수형자 중 비행경험자(71.1%)의 비율이 가정폭력 미경험 집단의 비행경험자(48.1%) 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이 된 후 본인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된 경우도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등 모든 폭력유형에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장래의 강력범죄 또는 청소년비행년의 주요한 요인으로, 범죄예방과 청소년보호라는 사회적 문제로 그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가정폭력 예방이야말로 성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이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이다.

나. 피해자 관점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가정폭력 사건의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경찰력과 관련 기관의 자원부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재범우려가 있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긴급임시조치권 발동을 위해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및 채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발생을 전제로 재범할 위험성을 판단하여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일 뿐 향후 경찰관

이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발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표가 가해자위주로 이루어져 있다.¹⁹⁾ 긴급임시조치권 발동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 피해받을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경찰관의 수시면담 횟수 등이 차별적으로 정해지고, 피해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위험성이 소멸할 때 까지 보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소개할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의 경우 피해자를 중심으로 향후 다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성을 평가하고, 경찰관은 위험성에 따라 피해자 보호 주기가 정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생각된다. 향후 우리 경찰도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과 함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가정폭력의 대응중심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 : 스페인의 1:1피해자 담당 경찰관제도 소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련 대책의 많은 부분은 가해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후술할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의 도입이나 지난 7월 검찰이 3년 내에 2번의 가정폭력을 범한 사람이 세 번째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를 경우 구속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3진 아웃제’²⁰⁾ 등이 대표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

19)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총 10개 문항으로 당해사건의 심각성(4개 문항), 피해자 심리상태(2개 문항), 가정폭력 전력(1개 문항), 가해자 성격, 심리적 특성(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20) 상습, 흉기 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 심각한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 방침(대검예규)

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 처벌위주의 정책은 결국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범죄다. 많은 가정의 경제권을 가장인 남성이 독점하고, 자녀의 장래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결심하기 까지는 피해자 개인에게 이혼에서부터 경제, 자녀문제까지 수많은 갈등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 가정폭력의 대응 초점을 피해자에 두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면서, 장래의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정책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스페인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Sistema VdG o VIOGEN)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²¹⁾

가) 관련 기관의 정보 공유 및 활용

스페인 은 유럽 내에서 아직까지 마초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2012년 한해 55,351명의 가정폭력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52명에 달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경찰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 병원관계자, 검찰, 판사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공유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 “1 피해자, 1 경찰관”을 목표로 하여 2013년 4월 기준 동시스템에는 국립경찰 12,993명 등 총 37,119명이 사용자로 등록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은 우선 관련 기관간의 정보의 연계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경찰보유 정보, 무기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전과기록, 교정정보, 사법부관리 정보 등 모든 관련 정

21) 해당 자료는 지난 5월 스페인의 내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내무안전연구소(Gabinete de Coordinación y Estudios)를 방문하여 입수한 자료를 정리한 것임

보를 기관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28> 기관별 등록사용자 현황 (2013. 4월 기준)

기 관	합계	군경찰	국립경찰	교정국	검찰	법원	평등부	자치경찰
등록 사용자	37,119	16,653	12,993	1,296	2,181	2,034	94	1,868

나) 피해자의 장래 재피해가능성 진단과 지속적인 평가

다음으로 본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피해자가 장래에 또 다시 가정폭력을 당할 위험성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위험성 판단 시스템으로 모두 현장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은 최초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위험성 진단(VPR)’을 통해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의 위험성을 진단하며, 위험성 진단 등급에 따라 피해자 면담주기가 정해지게 된다.

<표 29> 위험진단·평가결과에 따른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 면담·보호 주기

위험성 단계별 피해자 보호 주기	위험성 단계	보호 주기
	최고위험	72시간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높은 위험	7일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중간 위험	30일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낮은 위험	60일 단위 피해자 면담 및 시스템 입력

피해자별 담당 경찰관이 지정되면, 해당 경찰관은 면담기간에 피해자와 주변인 면담을 통해 ‘위험성 변화 평가(VPER)’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향후 가정폭력 재피해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평가를 하게 되며, 이러한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위험등급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시스템

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재피해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피해자를 관리·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누적등록피해자수는 270,360명이며, 2013년 4월 기준 최고위험 등급 5명, 높은 위험 등급 123명, 중간 위험 등급 2,782명, 낮은 위험 등급 12,590명의 피해자가 경찰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다)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정보의 신속한 통보

본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는 첫째, 경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경찰의 가장 큰 역할인 피해자 면담을 통한 위험성 판단에 있어 위험성 진단(Valoración Policial del Riesgo: VPR)의 경우 가해자의 심리상태,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빈도 등 16개 질문, 위험성 변화 평가(Valoración Policial de Evolución del Riesgo: VPER)의 경우 유사한 17개 질문에 대해 6점 척도의 답변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1> VPR 등록 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VPR registration. At the top, there are fields for 'Victima' (Victim) and 'Agresor' (Aggressor), each with 'Nombre' and '2º Apellido' (Last Name) fields. Below this is a 'CLIENTE' section with checkboxes for 'Victima', 'Autor', 'Testigos', and 'Informe Téc.'. The main part of the form is titled 'INDICADORES A VALORAR' (Indicators to Evaluate) and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Violencia Física. Con o sin lesiones.' (Physical Violence. With or without injuries), 'Violencia Sexual.' (Sexual Violence), and 'Emprego de armas u objetos contra la víctima.' (Use of weapons or objects against the victim). Each section has a 'PRUEBAS' (Tests) column with radio buttons for 'N', 'M', 'A', and 'E'. The 'Violencia Física' section shows a red bar chart with values for 'N', 'M', 'A', and 'E'. The 'Violencia Sexual' section also shows a red bar chart. The 'Emprego de armas...' section shows a red bar chart with a question mark icon.

※ 16개의 질문(중앙)에 대해 우측 답변란에 체크하는 형식, 좌측은 답변을 알게 된 경위(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기술적 방법)를 선택

두 번째로, 관련 기관 정보가 실시간으로 해당 경찰관에게 통보되는 경보시스템이다.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해당 경찰관의 이메일로 자동 통보되어 피해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으며, 관심등급 피해자의 면담 주기동안 위험성 변화 평가가 입력되지 않

을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경찰관의 이메일로 자동 통보되어 보호업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라.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NGO-지자체-경찰이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가정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지역자치단체, 관련 NGO가 함께 연계하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중 폭력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의 응답 모두 성격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60%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음주문제, 시가처가문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정폭력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가정적인 문제임은 그 특성상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동 조사에서 남편의 폭력 행동에 대해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²²⁾의 경우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2.7%로 절반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척, 이웃·친구 등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존한 경우가 24.6%로 가정 많았고 경찰신고(8.3%), 여성긴급전화 1366(1.0%), 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1.0%)로 나타났다. 즉 공식적 지원체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장치로 인식되고 있지 않거나, 홍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식적 지원체계 가운데 가장 도움정도²²⁾가 높았던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63.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의 이용경로를 보면 경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4.2%로 가장

22) 동 조사에서는 경찰의 경우 신고 후 조치 내용을 물었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경우 도움정도를 물었다. 여성긴급전화의 경우 49.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많았다. 즉 경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가정폭력상담소로 이어져 도움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함께 가정폭력이 광역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임을 생각할 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아동·여성폭력 방지 지역협의체와 경찰이 운영 중인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와 여가부에서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국가기관 및 여성쉼터 등 NGO가 연계한 서비스의 제공이야말로 근본적인 가정폭력 예방 및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버넌스적 대응을 통해 관계 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이며, 피해가 중대한 고위험군 가정의 사례에 대한 다기관 협의를 통해 실효적이며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이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한 체포우선주의 도입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체포우선주의의 도입여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의 체포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체포우선주의는 가정폭력을 범죄화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처벌을 통한 일반적인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억제이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²³⁾

1) 체포우선주의의 효과와 문제점 검토

이러한 체포를 통한 가정폭력 재범방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23)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1, p.87.

1981년 실시한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실험결과 경찰의 응급조치 수단 중 가·피해자의 분리 또는 중재에 비하여 체포에 의한 경우가 재범비율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적 체포제도를 2차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포우선주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니애폴리스 실험의 후속 연구에서는 경찰의 강제적 체포가 기혼 취업자 등 특정집단을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미혼 실업자나 빈민가의 사람들에게는 체포가 장기적으로 폭력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사실상 체포의 일관된 역지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⁴⁾

다음으로 법리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의 형사제도는 범죄의 합리적 의심만으로는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없으며, 체포는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즉 수사목적은 전제로 피의자로부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 격리시킬 목적이라거나 장래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경찰적 목적의 체포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²⁵⁾

2) 가정폭력의 피해 심각성을 고려한 도입 의견

2010년 여가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남·여 응답자 모두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24) 서거석, 김운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2000, p.92,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3, pp.42-43.

25)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07, p.304, 이성용,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소 2013년도 학술세미나 자료집

조치 강화'를 1순위로 꼽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응급조치로 규정한 폭력행위의 제지, 가·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권한 고지에 불과하며, 가·피해자의 분리방안, 범죄수사 후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을 이탈한 후의 재범방지 방안 등 즉시적이며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미비되어 있다.

물론 가정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임시조치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신설되어,²⁶⁾ 이전 보다는 현장 경찰관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임시조치의 실무상 적용 어려움으로 현행법체포 이외에 긴급임시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 및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위한 가해자의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나 형벌 등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²⁷⁾

또한, 현재의 가특법에 별도의 체포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에 현행범과 준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보충적으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으나²⁸⁾, 우리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에 있어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촉

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27) 김상운,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권 3호, 2012, pp.15-18.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임.

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²⁹⁾ 피의자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호를 위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가정폭력 사범이라고 해서 특히 예외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발부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있어 현장 경찰관에게 체포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만을 비난하기에는 그 이면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현행법 체포를 경찰 응급조치의 하나로 규정하는 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어,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체포를 응급조치의 하나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술한 체포우선주의에 대한 법리적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현행법 체포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체포우선주의가 보편적으로 도입되어있다는 미국의 가정폭력범죄자 체포율은 1999년도에 약 34.9%, 영장발부는 1.5%였다고 한다.³⁰⁾ 예전의 자료이기는 하나 1980년대 후반 이미 체포우선주의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음을 감안하면 현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체포우선 또는 체포강행주의라는 이름과 다르게 모든 가정폭력사범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김재민(2006)의 연구에서 예를 든 미시간 주의 경우처럼 경찰의 체포 기준과 절차를 정책표준안으로 제도화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소극대응을 방지하고 체포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28)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개입, 백산자료원, 2002, pp.231-239/ 김운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호, 2007, p.82, 재인용.

29) 이영돈, 앞의 논문, p.44.

30) 이영란, 미국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처벌, 형사정책 제11호, 1999, pp.298-299.

평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³¹⁾

이견이 없지 않으나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실험에서와 같이 경찰의 체포가 가정폭력 재범억제에 효과가 있고, 우리의 긴급입시조치가 실무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부합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일정 점수이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³²⁾, 가해자의 보복폭행우려가 현저하여 피해자의 증언거부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에서 현장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를 보다 강제하는 방향으로 표준안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지난 7월 검찰에서는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6월에 있었던 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상습·흉기이용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가해자 엄정대처안을 내놓았다. 관련 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의 협의를 통해 구속의 전단계인 체포단계에서 경찰의 체포활동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반 근거가 마련된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가정폭력사범의 체포에 대한 향후 불법체포 시비 등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우려 또한 불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체포우선주의의 도입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체포우선주의의 전면 도입이전에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현행범체포

31) 김재민,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2006, pp. 195-196. 김은경(2003)의 연구에서도 미국 Santa Clara County의 예를 들며 중죄에 대해서는 의무적 체포사유이나 경죄인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금지명령 위반, 불법 무기 소지 등의 사유를 경찰관이 직접 목격했을 때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2) 2013년 8월 개선된 재범 위험성 조사표 결과 13점 중 7점 이상인 경우와 폭행심각도가 상인 경우, 현재 입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거나, 본 건을 제외하고 가정폭력 빈도가 3회 이상인 경우의 무적으로 긴급입시조치권을 행사토록 규정

요건에 맞는 현행법을 과감히 철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 「가정폭력 전문경찰관」의 양성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은 2014년부터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우선 135명의 경찰관을 확보하여,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 가정에 대해 지역 1366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수사와 보호시설 연계활동 등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³³⁾

그러나 이러한 반가운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성공적인 정책시행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선 전문성 확보라는 면에서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시행이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소수의 전담경찰관이 수사활동,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호시설 연계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무의 순환이 비교적 잦은 경찰조직의 특성상 과다한 업무 부담이 생긴다면 과연 전문성이 담보될 정도로 오랜 기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할 경찰관이 있을지 의문이며, 가정폭력과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될 때 또다시 가정폭력 업무에 좀 더 익숙한 경찰관으로 변질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피해위험 또는 가해위험 정도에 따라 고위험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전담경찰관의 경우 고위험군-저위험군 구분을 위한 평가업무 및 리스트 작성·관리를 담당하고,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33) 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회의자료, 2013. 6. 28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담당하는 등 보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여 전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저위험군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 지역경찰관 또는 형사 등이 수사방문을 통해 위험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관이 보고한 위험성에 따라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소개한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책처럼 피해자의 재피해 위험성을 평가하여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³⁴⁾

또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피해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기법 등 전문소양교육을 받도록 하여, 피해가 심각한 가정의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4)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도 현장경찰관이 위험성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상황이 매우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폭력위험대응 기관협의회(MARAC)에 회부하여 대응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영국 MARAC의 경우, 형사정책 주요동향, 형사정책연구원, 2011.

참고자료

1. 스페인 가정폭력 위험성 진단(Valoración Policial del Riesgo: VPR)

질문표

출 처	평가 지표	강도
피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목격자 <input type="checkbox"/> 기술적 방 법 <input type="checkbox"/>	· 물리적 폭력 여부(상해여부)	알지못함 - 전혀 없음 - 낮음 - 중간 - 높 음 - 매우 높음
	· 성적 폭력 여부	
	· 피해자에 대한 무기 또는 물체 사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손해를 야기하는 협박 또는 기도	
	· 폭력적 협박 또는 사건의 증가 또는 반복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심리적 폭력	
	· 주거, 동산 또는 다른 물건에 대한 손괴	
	· 임시조치, 보호조치 불이행	
	· 안전에 관한 형사적 수단 또는 형벌의 위반	
	· 공권력 또는 공무원에 대한 가해자의 도전적·경멸적 행동 또는 이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행동	
	· 가해자의 전과와 경찰기록(특히 폭력과 관련한)	
	· 가해자의 중독성 물질, 알코올, 약물 남용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과장된 애정 또는 집착을 보이는지 여부	
	· 부부관계에서의 명백한 문제점 여부	
· 가해자의 재정적 또는 직업적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 가해자의 자살 성향		

2. 스페인 가정폭력 위험성 변화 평가(Valoración Policial de Evolución del Riesgo: VPER) 질문표

출 처	평가 지표	강도
피해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목격자 <input type="checkbox"/> 기술적 방법 <input type="checkbox"/>	·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할 가능성여부(감옥 또는 치료기관 수감여부, 국외출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알지못함 - 아님 - 가끔 - 자주 - 네
	·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지, 원거리로 거소를 옮겼는지, 임시조치 등을 따르고 있는지)	
	· 신고시점부터 가해자가 평온한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태를 추정하여, 피해자나 주위에 대한 보복 감정이 없는지 여부)	
	· 가해자가 재산분리와 친족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가해자가 관계 공무원과 협조적이며 법률 준수 태도를 나타내는지 여부	
	· 가해자가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인지 여부	
	· 가해자가 후회하거나 지원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본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지원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발견될 가능성이 적은 장소로 옮겨졌는지 여부	
	· 가장 최근의 평가이후 사고 없이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가해자가 도주 중이거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지 여부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과장된 애정 또는 집착을 보이는지 여부	
	· 가해자가 자살 성향, 심리적·정신의학적 문제 또는 중독증상을 보이는지 여부	
· 피해자가 법적 조치들이 중단될 것을 바라거나 신고취소 또는 보호수단의 중지를 원하는지 여부		
· 가해자가 이혼이나 별거의 요구를 수락하지		

	앓는 상태인지 여부	
	·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의학적 또는 중독증상을 보이는지 여부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위에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실제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재엽(2007),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Javad H. Kashani, Wesley D. Allan 저; 조미숙 역(2005),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도서출판 21세기사.

2. 논문

기광도(2005),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범죄간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김동기(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6호.

김병주(2002),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개입, 백산자료원.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I)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김운회(2007),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호.

김은경(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 외국의 입법 및 정

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엄애선(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15권 4호.

김재민(2006),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김재엽(1997),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호.

김재엽, 송아영(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호.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2007),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7호.

김한균(2011),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영국 MARAC의 경우, 형사정책 주요동향, 형사정책연구원.

노치영, 박성연(1992),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의학회지 제30권 4호.

서거석, 김운희(2000),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송주영(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번역문), 소년보호연구 제16호.

유순화(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 이경은, 장덕희(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폭력범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 이성식(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 이성용(2007),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 이성용(2013),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소 2013년도 학술세미나 자료집.
- 이영돈(2013),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 이영란(1999), 미국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처벌, 형사정책 제11호.
- 최재희, 배화옥(2012), 성장기폭력 경험과 성태도가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집 4호.

3. 기타

- 관계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2013. 6. 28),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안 회의자료.
- 교정본부(2011), 2011 교정통계연보.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중앙일보, 2012년 5월 29일자 10면.

II. 외국문헌

1. 단행본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논문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1).

Browne K, Herbert M. (1997). Preventing family violence. Chichester, J. Wiley.

Dixon L, Browne KD, Hamilton CE. (1999), Police recognition of links between child abuse and spouse abuse. *Child Maltreatment*.

Egeland B, Bosquet M, Chung AL.(2002)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maltreatment: implications for breaking the cycle of abuse. In: Browne K et al., eds. Early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 handbook. Chichester, J. Wiley.

McCord Joan. (1983). A forty year perspective on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Vol 7.

Pinheiro PS.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New York, United Nations.

Rouse, L. P., & eVE, r. a. (1991). Explaining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 girls: Internal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Clinical Sociology Review*, 9.

Salter D et al. (2003). Development of sexually abusive behaviour in sexually victimized males: a longitudinal study. *The Lancet*. Vol. 361.

Skuse D et al. (1998).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sexually abusive behaviour in sexually victimised males. *BMJ*, 317.

Straus, M(1990), *Social Stress and Marti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Widom, C. S. (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Vol. 224.

3. 기타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The cycles of violence*.

책임연구보고서 2013-09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교도소 수형자 설문 분석을 통한 연구 -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